광진구 구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련 -

[시행 2018.11.1.]

제1조(목적)

구의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"보장협의체"라 한다)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주민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

제2조(명칭)

명칭은 "구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"로 한다

제3조(구성 및 기능)

① 보장협의체 구성은 10인 이상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(동장)과 협의회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 (부위원장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.)

② 고문은 3인 이내로 별도로 둘 수 있다.

③ 고문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·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④ 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·개인
3. 지역 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
4. 동장, 주민자치위원장, 통장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

⑤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
1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·물적 복지자원 발굴
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·지원
3.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공동 지역특수사업에 대한 논의 및 추진방안 모색

제4조(비밀준수)

보장협의체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위·해촉)

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 및 의사)

① 위원장은 해당 보장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1/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.

③ 지역복지 공동사업 추진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사례관리는 즉시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.

⑤ 협의체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(총무)를 둔다.

⑥ 협의체 복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기(담당자)를 둔다.

제8조(회의록 작성)

① 보장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회의 참석자 명단
3. 협의사항 및 결과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·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때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.